

서울고등법원 2018. 4. 20 선고 2017나2052772 판결 [매매대금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18. 4. 20 선고 2017나2052772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6가합105716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주식회사 유창그린텍

피고, 항소인주식회사 A

변론 종결 2018. 4. 13.

판결 선고 2018. 4. 20.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6가합105716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쪽 제11행의 '이 사건'을 '제1심'으로, 제7쪽 제16행의 '이 판결'을 '제1심 판결'로 각 고치고, 제7쪽 제7행의 '이미' 다음에 '그 이행이'를 추가하며, 아래와 같이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담보제공약정과 진입로확보 및 사용승인취득 약정은 동시이행관계라고 볼 수 없거나, 동시이행관계라고 하더라도 진입로확보 및 사용승인취득 약정은 이미 그 이행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하는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부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항소이유에 관한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덧붙이는 판단

1) 그리고 피고는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는 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다49370 판결을 들면서, 이 사건의 선행소송에서 위 두 약정이 동시이행관계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에 반하는 제1심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동시이행관계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 인정' 문제가 아니라 '법적 판단'의 문제라 할 것이고, 위 대법원 판결 자체로도 '당해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고, 이 경우에 배척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일일이 설시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한편 피고는 갑 제6호증을 지적하며 원고가 피고에게 준공검사를 2012. 8. 20.까지 받아주겠다고 약속하면서 만일 그 약속이 이행되지 아니하면 피고가 입은 손해를 원고가 책임지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자비로 15억 원 정도를 들여 공사비를 해결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였고 이는 피고의 이 사건 잔금 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는바(그러면서 예비적으로는 위와 같은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항변도 하고 있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인 2012. 7. 26. 피고에게 피고의 공장 준공에 필요한 공사를 2012. 8. 20.까지 책임지고 완료하기로 하면서 이행되지 않을 경우 그 피해를 책임지기로 약속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원고가 위와 같은 공사 완료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에 따라 피고가 자비 15억 원 정도를 들여 공사를 완료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② 설령 피고가 스스로 공사비를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보면 위와 같은 준공에 필요한 공사의 공사비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③ 또한 위와 같이 담보제공약정과 진입로확보 및 사용승인취득 약정이 동시이행관계라고 볼 수 없는 점, 위와 같은 약속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몇 달이 지난 후에 피고가 담보제공약정을 위반하고 있던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과 별도로 이루어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과 같은 손해배상채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와 이 사건 잔금 지급의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의 견련관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자동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예비적 상계항변을 포함한다)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동근

판사송석봉

판사서삼희